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천하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80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1.

발 의 자:천하람·정성호·이준석

이주영 • 한병도 • 김병기

김종민 • 백혜련 • 안규백

이강일 • 천준호 • 한준호

최은석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제작비의 최소 5%에서 최대 30%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영상콘텐츠와 달리 출판콘텐츠는 최근 노벨문학상을 배출할 정도로 주요 K-문화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이 전무한 상황임.

독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독서율은 계속 감소하여 작년 기준 역대 최저치(43.0%)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출판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음.

따라서 학습지 외 출판콘텐츠에 대하여 제작비의 10%(중견기업 20%, 중소기업 30%)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침체기에 빠진 출판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국

민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여 제2, 제3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자 함(안 제25조의8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8(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판콘텐츠로서 제작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콘텐츠(수험서, 참고서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콘텐츠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출판콘텐츠"라 한다)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출판콘텐츠 제작비용"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(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)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해당 출판콘텐츠가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
- 1.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
- 2.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
-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
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적용하다.
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출판콘텐츠의 범위,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
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부터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선 성 <신 설>	제25조의8(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판콘텐츠로서 제작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콘텐츠(수험서, 참고서 등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콘텐츠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출판콘텐츠"라 한다)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출판콘텐츠"라 한다)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출판콘텐츠 제작비용"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판콘텐츠 제작비용"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(중견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20, 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20, 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30)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출판콘텐츠가 처음으로 소비자에게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

<u>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</u> 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 <u>다.</u>

- 1.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 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
- 2.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 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
-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야 한다.
-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출판콘 텐츠의 범위, 제작비용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